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0. 22-----사하구청장

나.회 부 일 자 : 2004. 10. 22

다.상 정 일 자 : 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0.28)상정,채택

2. 제안설명요지(조동규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의거 중요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조잔디 축구경기장(을숙도운동장) 건립

- 2005년도 부터는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는 천연 또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만 대회를 갖도록 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급히 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실정이며,
- 월드컵 잉여금(30억원 정도) 활용 추진사업에 따라 을숙도운동장에 인조잔디 전용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전국규모의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다대도서관(가칭) 건립**

- 우리구 도서관 현황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설치 기준에 미달 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 도서관 현황 및 인구 대비 타 구에 비하여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 낙동로변을 중심으로는 사하도서관과 을숙도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다소 있으나 급격히 인구가 늘어난 장림, 다대지역에는 문화시설이 없으므로 기존 도서관의 이용불편 및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도서관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므로 다대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소규모 쉼터 조성**

- 지정보호수에 대한 안전 생육공간 확보 및 주변을 소규모 쉼터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 **을숙도공용주차장내 화장실 신축**

- 을숙도공영주차장내 화장실 시설노후 및 악취 발생 등으로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 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개선코자 함.

○ **공립 승학어린이집 이전 신축**

- 공립시설인 승학어린이집은 1985년 신축하여 새마을 유아원 으로부터 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하여 천정 및 바닥누수, 복도 난방미비, 수도배관 부식 등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건물 안전에 문제가 많으며, 또한 교사실 및 주차시설 미비 등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심히 저해하므로 현 시설을 이전 신축하여 보육 아동들에게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구분	소재지	면적(m ²)	지목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천원)
1.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건립	토지	하단동 1151-12외 4필지	31,050	잡종지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1,850,000
2	다대도서관건립	토지	다대동 1548-14	1,657	대지		5,342,000
3	소규모 쉼터조성	소계		129.6		-	139,598
		토지	감천동 140-2번지 외 1필지	96	대지		97,229
		건물	감천동 140-2	33.6	블록조	지상1층, 2개동	42,369
4	을숙도공영 주차장내 화장실 신축	건물	하단동 1149-5	100	철근콘크리트	남자 여자	300,000
5	공립승학어린이 집 이전신축	소계		1,211.37			1,000,000
		토지	괴정동 1075-7	599.8	대지		320,000
		건물		611.57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680,000
합 계	5	계		34,147.97			8,631,598
		토지		33,402.8			7,609,229
		건물		745.17			1,022,369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2005년도 예산편성전의 당해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취득목적이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될 뿐만아니라, 이미 주민건의 등으로 인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승인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